better life with sema

적금

가입금액과 기간을 내 맘대로 정하는

박사후 연구원 과학기술인으뜸적금

최대 연복리 4.25%!

이 설명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"과학기술인으뜸적금" 가입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
실제 가입 및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은 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, 「목돈급여사업규약」에 따릅니다.

과학기술인으뜸적금	회원이 **자율적**으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을 정하고, **매월 납입**하여 목돈을 모으는 정기적금형 상품

가입자격

✔ 대학 또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이공계(자연과학 및 공학계열) 박사후연구원

가입기간

✔ 가입기간

1년 2년 3년 5년 → 1년, 2년, 3년, 5년 중 선택

→ 가입일은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 지정

가입금액 및 한도

✔ 월납입액

최소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범위 내 본인선택 **(1만원 단위)**

✔ 가입한도

전 계좌 만기원금 총액 **1억원 한도**

* 가입기간별 한도 : 1년(월 833만원), 2년(월 416만원), 3년(월 277만원), 5년(월 166만원)
* 기존 '1천만원 만들기 상품('17.7~'19.12) 가입 금액과 한도 합산. 단, 목돈(일시금) 5억원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음

→ 가입한도 범위 내 복수 가입 가능, 가입기간 중 증·감좌 가능

지급률

✔ 적용지급률

최대 연복리 **4.25%**

(2024.11.12 기준)

가입기간	1년	2년	3년	5년
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이율	4.00%		4.25%	

*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가입일 당시 금리가 만기일까지 적용

적용세율

✔ **일반과세 15.4%,**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

✔ 비과세 자격이 되는 경우
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 가입가능 (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)

* 단, 2020년 1월 1일 이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

가입방법

1 온라인

공제 > 과학기술인으뜸적금 > 가입신청안내 > 가입신청(박사후 연구원)

* 박사후연구원은 ① 박사학위증명서 ② 산학협력단과의 계약서(또는 재직증명서)
③ 참여연구원 증명서(또는 연구참여 경력증명서) 모두를 첨부 파일로 제출
※ 필요 시 박사후 연구원임을 판단할 수 있는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.

✔ 출금일 **5영업일의 전일까지 가입신청 완료 시** 익월 1일 최초 부담금 인출

✔ 당월 접수마감일 이후 가입신청 건은 **차익월 1일에 인출**

부담금 납부

✔ **정기납부일**
매월 1일 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

✔ **부담금 납부**
가입시 지정한 **본인 계좌에서 자동출금**

* 잔액부족 등으로 인한 미출금 건에 한하여 다음 3영업일에 추가인출 시도
* 최종 미출금 시 홈페이지 미납분 개별납부 신청을 통해 납입 가능
* 초회미납 시 해당 신청건은 익월로 이월 (3회차 이월시 가입신청 반려)

✔ 가입 중 **연속 3달 미납 시 납입중지**

✔ 출금예정일 **5영업일의 전일까지 신청(가입, 증·감좌) 시** 익월부터 인출 적용
당월 접수마감 이후 신청 건은 차익월부터 인출 적용

✔ **다건 가입 시 인출 우선 순위**
1순위 : 연체가 있는 건 **2순위 :** 가입이 오래된 건 **3순위 :** 누적금액이 큰 건

미납분 개별납부

✔ **신청방법(온라인)**

- 공제 > 과학기술인으뜸적금 > 미납분 개별납부 신청 안내 > 온라인신청
- 홈페이지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MY공제 > 과학기술인으뜸적금 > 신청 > 미납분 개별납부 신청

✔ **납부방법**

- 미납된 회차 중 미납분만 선택 납부
- 개별납부 신청시 발급된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 납부(분할 납부 불가)

✔ **신청불가기간**

- 정기출금 기간 5영업일 전 ~ 2차 정기출금일 다음영업일까지 신청불가
  (예시) 24년11월25일(12월 정기출금일 5영업일전) ~ 12월6일(2차 정기출금일 다음 영업일)

- 이자계산 : 입금 당일부터 가입당시 지급률로 이자 계산
- 연속 3회미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(납입중지) 대상 제외

급여지급 (만기수령)

✔ **만기지급일**

최종납입일의 **익월 1일(휴일인 경우 전영업일)**

✔ **급여지급**

가입 시 지정한 **지급계좌로 만기지급일에 지급**

* 만기일 4영업일 전부터는 중도해지 신청 불가

✔ **재예치**

만기수령액을 목돈급여(만기지급형, 이자지급형, 원리금지급형, 연금지급형)로
예치를 원할 경우 만기 재예치 가능

✔ 최종 납입일 이후 ~ 만기지급 3영업일 **오후 4시 전까지** 신청가능

* 단, 연금지급형은 최소 3천만원부터 재예치 가능

이자계산방법

✔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경과기간에 대하여 회원지급률로 **연복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지급**

$$\sum_{h-1}^{n} [\, h\text{회차원금} \times [\, (1 + \text{지급률})^{\frac{\text{경과일수}}{365}} - 1 \,] \,]$$

안전장치

공제회

✔ **정부는 공제회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보조금·출연금 지원·지급 가능 (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)**

중도해지

✔ **중도해지지급금**

원금 100% + (해지일까지 발생이자 × 중도해지지급률)

✔ **중도해지지급률**

~90일미만	90일~180일미만	180일~1년 미만	1년~2년 미만	2년~3년 미만
이자의 50%	이자의 60%	이자의 70%	이자의 80%	이자의 90%

✔ **중도해지 신청방법**

1 온라인

공제 › 과학기술인으뜸적금 › 해지신청안내 › 중도해지신청

* 지급희망일은 신청일의 다음 영업일 이후 날짜로 지정 가능(신청 당일 지급 불가)

2 오프라인

목돈급여 지급신청서 **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**하여 공제회 제출

* 목돈급여 지급신청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

✔ **제출처**

(E-mail) info@sema.or.kr (fax) 02-3469-7799

✔ 정기출금일 전 영업일부터 ~ 정기출금일 다음영업일까지 해지일 지정 불가

기타 유의사항

✔ 회원이 가입기간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의 청구에 따라 중도해지지급금을 유족에게 지급.
이자는 **사망일+30일까지** 회원지급률 적용, 그 이후는 공제회 퇴직연금 현금성자산지급률
('25.1월 현재 2.0%)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

✔ **연속 3회 미납에** 의한 자동중도해지 시에도 **회원본인의 급여지급청구에 의하여 급여지급**되며,
이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지급률이 적용됨.

✔ 만기지급 시 수령계좌 폐쇄, 자동중도해지 후 회원의 청구지연 등
회원의 사유에 의한 급여지급지연 시 지연기간 동안의 이자는 연 1%를 일할계산

문의사항

✔ 1577-0789 (내선 3번)